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3. 5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2. 26. 이민석 의원 외 8명

나. 회부일자 : 2021. 2. 26.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1. 3. 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영미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- (2)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(3)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(4) 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(신준호 전문위원)

○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사고에서 질식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,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음.

○ 주요 조문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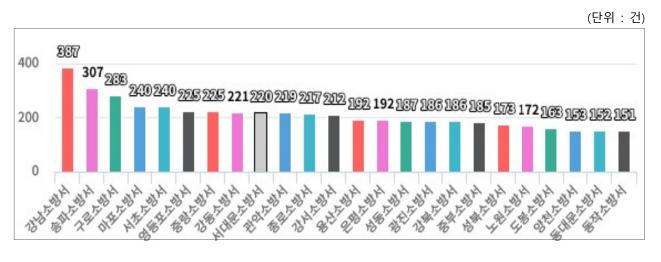
-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3조에서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4조는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화재 대피 관련 홍보 및 캠페 인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사고로 인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의 설치를 권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마련되었음.
-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마포구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40건으로 사망 3건, 부상 29건, 재산피해20억6,904만9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음.

<표 1.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할관서별 화재건수>4)



- 화재발생에 따른 사망사고의 주요원인이 유독가스 흡입인 것을 고려하고 공공기관 및 어린이, 노인,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향후, 집행부에서는 구민 누구나 방연마스크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용법의 교육을 포함한 홍보계획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· 시행해야 할 것임.

⁴⁾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

<표 2. 안 제3조에 따른 시설 현황>

(단위 : 개소)

구분	합계	공공청사	공공기관	영유아 시설	학교	복지시설	의료기관
마스크 비치 권장시설	1,311	20	28	228	47	248	740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